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8호**  
**2019. 2. 1.(금)**

## 차 례

### 고 시(2)

-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9-14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5호) .....4

### 공 고(4)

-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 제2019-107호) .....5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19-108호) .....6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공고 제2019-114호) .....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118호) .....10

공 람									
--------	--	--	--	--	--	--	--	--	--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시행구역면적	비 고
와동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번지 일원	43,930㎡	37,906㎡ (공동주택 용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정식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1, 3층(신대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9년 2월 ~ 2024년 2월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년 1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39-14, 43-1번지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유치원 50%이하
용 적 륜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0%이하, 유치원 200%이하
층수(높이)	• 공동주택 89m이하, 유치원 4층 이하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사 업 명	•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37,906㎡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 128,083.7440㎡                - 지하층 : 38,751.2156㎡, 지상층 : 89,332.5284㎡</li> <li>• 층 수 : 지하 3층, 지상23층~29층</li> <li>•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 7개동 910세대                - 근린생활시설 : 1개동 25호</li> <li>• 건축면적 : 6,044.0012㎡</li> <li>• 최고높이 : 83.60m</li> </ul>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건 폐 율	• 15.9447%
용 적 율	• 235.6686%
주차대수	• 1,165대
세 대 수	• 910세대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 : 326.3366㎡</li> <li>• 경비실 : 64.7560㎡</li> </ul>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 997.9800㎡</li> <li>• 경로당 : 148.9778㎡</li> <li>• 어린이놀이터 : 957.2200㎡</li> <li>• 어린이집 : 350.9490㎡</li> <li>• 주민운동시설 : 1,670.1892㎡</li> <li>• 주민복지시설(MOM'S &amp; KID'S카페) : 274.8180㎡</li> <li>• 작은도서관 : 219.7328㎡</li> </ul>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대로	1	2	35~42 (3)	주 간선	16,015 (70)	대로1-1 (신흥동11-5)	북측지구계 (신탄진116-3)	일반 도로	-	1965.10.13	
변경	소로	1	와동 2	10 (1~2)	국지 도로	840 (260)	대로1-2 (와동 383-13)	중로3-167 (와동산89-1)	일반 도로	-	1977.2.26	
기정	소로	2	와동 1	8	국지 도로	448	중로3-167 (와동346-1)	중로1-296 (와동48-4)	일반 도로		1977.2.26	
기정	소로	2	와동 3	8	국지 도로	93	중로3-279 (와동42-3)	소로1-와동2 (와동 72)	일반 도로		1977.2.26	
변경	중로	1	296	20 (12)	집산 도로	98 (98)	대로1-2 (와동39-13)	중로 3-279 (와동48-4)	일반 도로		2015.4.3	
변경	중로	3	279	12~15 (4~15)	국지 도로	251 (251)	중로1-296 (와동48-4)	소로1-와동2 (와동12-2)	일반 도로		2011.11.4	

###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규	12	-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1,840	2015. 4. 3	

## 10. 다음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448-2-8	한남로 120	2019. 2. 1	건물신축	중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한남대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신탄진동 132-7	신탄진동로47번길 45	2019. 2. 1	건물신축	신탄진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1687-9	신일서로67번길 54	2019. 2. 1	건물신축	신일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신탄진동 128-3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있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1.공시송달 방법 : 대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공 고 기 간 : 2019. 2. 1. ~ 2019. 2. 14.(14일간)
- 3.공 고 장 소 : 대덕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 4.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김병식 / 석봉1구(건축물대장 상 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9.1. 30. 건축물대장 말소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구분/층별	구조/지붕	용도	면적
	신탄진동 128-3	주/1층	흙벽돌 / 세와	주택	47.19㎡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광역시장의 시행하는 『대전 평촌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대전 평촌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 (☎042-270-6393)
3.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19. 2. 1. ~ 2019. 2. 16.(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5. 열 랐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별관 4층)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별관4층(☎042-608-5102)
6.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는 공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우리 구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처

- 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1호 / 우편번호 3524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044-201-5317)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우편번호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374)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계족로 (평생문화 센터네거리)	교통신호기 배관설치	법동 282- 3번지 앞	D=100, 65	투스콘	9.0	'19. 3. ~ '19. 5. ( 착공일로 부터 50 일간)	6.6 (50일)	0.007
					보도블럭	2.0			

# 사진대지



위치도



현황사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4.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헤미리마트 덕암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14(덕암동)	신준호	영업소 시설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1.2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98(읍내동, 2층)	김종출	영업소 시설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1.2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시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 로8번길 31(중리동, 1층)	김혜옥	영업소 시설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1.22.)	

5. 공고기간 : 2019. 2. 1. ~ 2. 16. (15일간)
6. 고지사항 : 위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4. 끝.